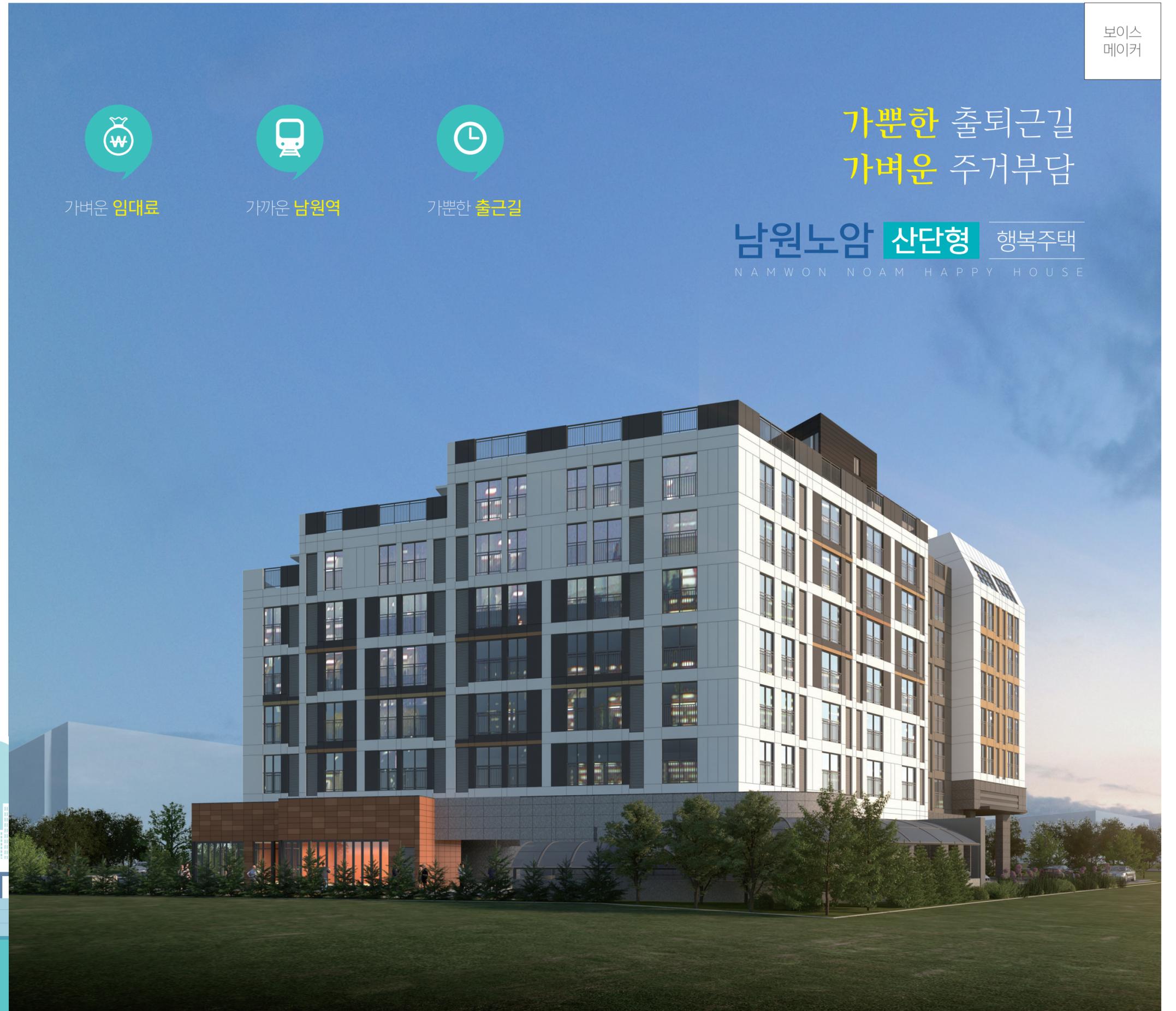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NAMWON NOAM HAPPY HOUSE

CONTENTS

- 02. 인트로
- 04. 행복주택 소개
- 06. 지역조감도 · 위치도
- 08. 단지조감도 · 조경배치도
- 10. UNIT PLAN
- 24.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 25.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 26.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가벼운 임대료



가까운 남원역



가쁜한 출근길

가쁜한 출퇴근길
가벼운 주거부담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NAMWON NOAM HAPPY HOUSE

* 상기 이미지투시도는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의 미래가 모여있는 남원노암 행복주택

| 행복주택 (산업단지형)이란? |

산업단지근로자 ·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2030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 기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됩니다.
-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합니다.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청년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의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남원의 산업단지와 인프라를 한곳에 남원의 첫 행복을 노암에서 만나다

바로 앞 **산업단지**와 단지 앞 **요천**

쾌적한 교통

남원역(KTX), 남원공용버스터미널, 광주대구고속도로(남원IC·북남원IC)등 철도 및 다양한 교통망

늘푸른 생활

단지 북쪽으로 요천이 흐르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남원의료원, 보건소 등 밀집된 인프라로 편리한 생활

가까운 직장

바로 앞 어현과 노암 1·2·3 등 4개 산업 및 농공단지가 위치한 직주근접 생활로 여유로운 일상

* 상기 지역조감도 및 위치도는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지조감도



조경배치도



편안한 내일이 기다리는 곳 직장인 맞춤형 보금자리

일과 주거를 가까이!

어울림 센터

단지 중앙에 조성된 취미와 여가를 누리는 생활형 공간

커뮤니티카페

주민들이 생활 정보를 공유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휴식형 공간

주민운동시설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건강 생활을 지원합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배치도는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21A



53세대

주택면적

주거 전용	21,850m ²
주거 공용	12,1623m ²
기타 공용	5,5577m ²
지하주차장	13,5336m ²
계약면적	53,1036m ²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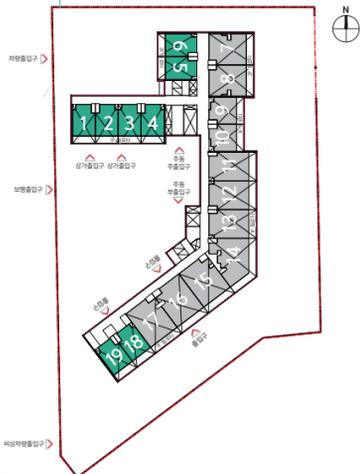
거실/침실	10.96m ²
주방/식당	4.68m ²
욕실	3.46m ²
현관	2.75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6.60m ²
-------	--------------------



Key Map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마감재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파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형만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21B

12세대



주택면적

주거 전용	21,930㎡
주거 공용	12,206.8㎡
기타 공용	5,578.1㎡
지하주차장	13,583.1㎡
계약면적	53,298.0㎡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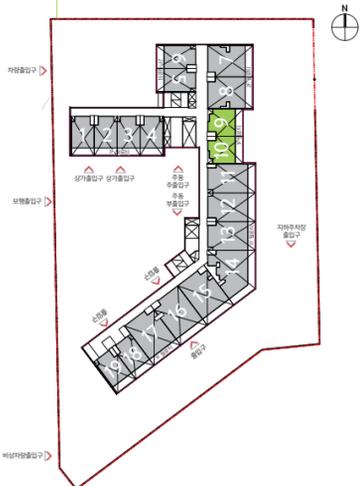
거실/침실	10.72㎡
주방/식당	5.19㎡
욕실	3.30㎡
현관	2.72㎡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7.80㎡
-------	-------



Key Map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마감재대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파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형만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UNIT PLAN | 단위세대 평면·아이소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36A

18세대



주택면적

주거 전용	36.9600㎡
주거 공용	20.5730㎡
기타 공용	9.4012㎡
지하주차장	22.8925㎡
계약면적	89.8267㎡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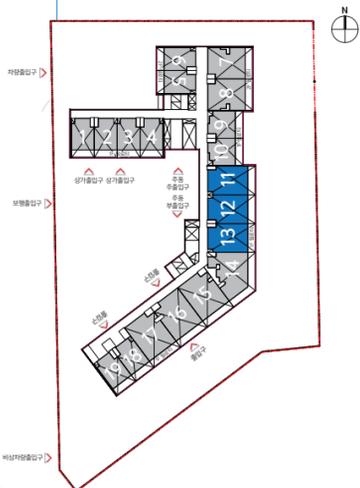
거실/침실	14.68㎡
주방/식당	14.67㎡
욕실	3.46㎡
현관	2.46㎡
창고	1.69㎡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8.25㎡
-------	-------



Key Map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마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파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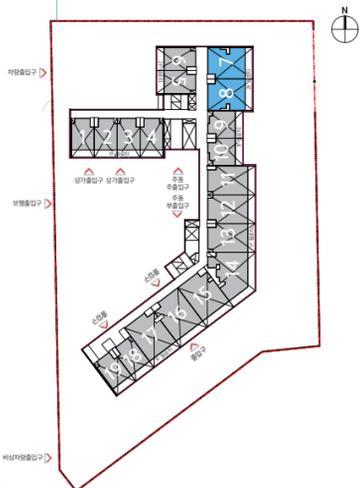
10세대(주거약자용)

주택면적	
주거 전용	36.8200㎡
주거 공용	20.4950㎡
기타 공용	9.3656㎡
지하주차장	22.8058㎡
계약면적	89.4864㎡

실별면적	
침실 1	7.02㎡
침실 2	5.72㎡
거실	7.84㎡
주방/식당	10.23㎡
욕실	3.61㎡
현관	2.40㎡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9.00㎡

Key Map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경관계상 마감재대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패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6C

4세대



주택면적

주거 전용	36,6100㎡
주거 공용	20,3781㎡
기타 공용	9,3122㎡
지하주차장	22,6758㎡
계약면적	88,9761㎡

실별면적 하부층

주방/식당	13.55㎡
욕실	3.46㎡
현관	2.75㎡
계단	1.88㎡

상부층

거실	9.03㎡
침실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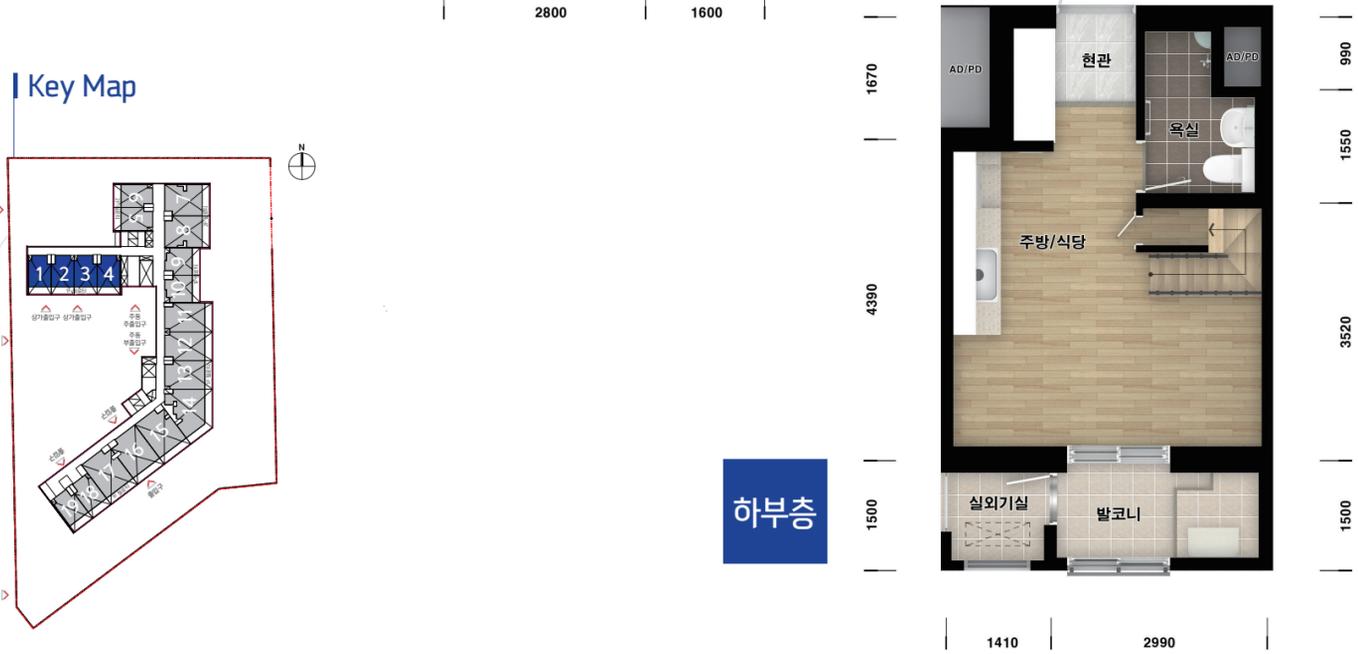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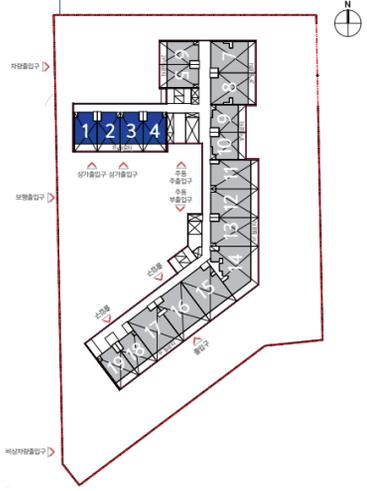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6.60㎡
-------	-------



상부층

Key Map



하부층

상부층

하부층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경관계상 마감재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4A



17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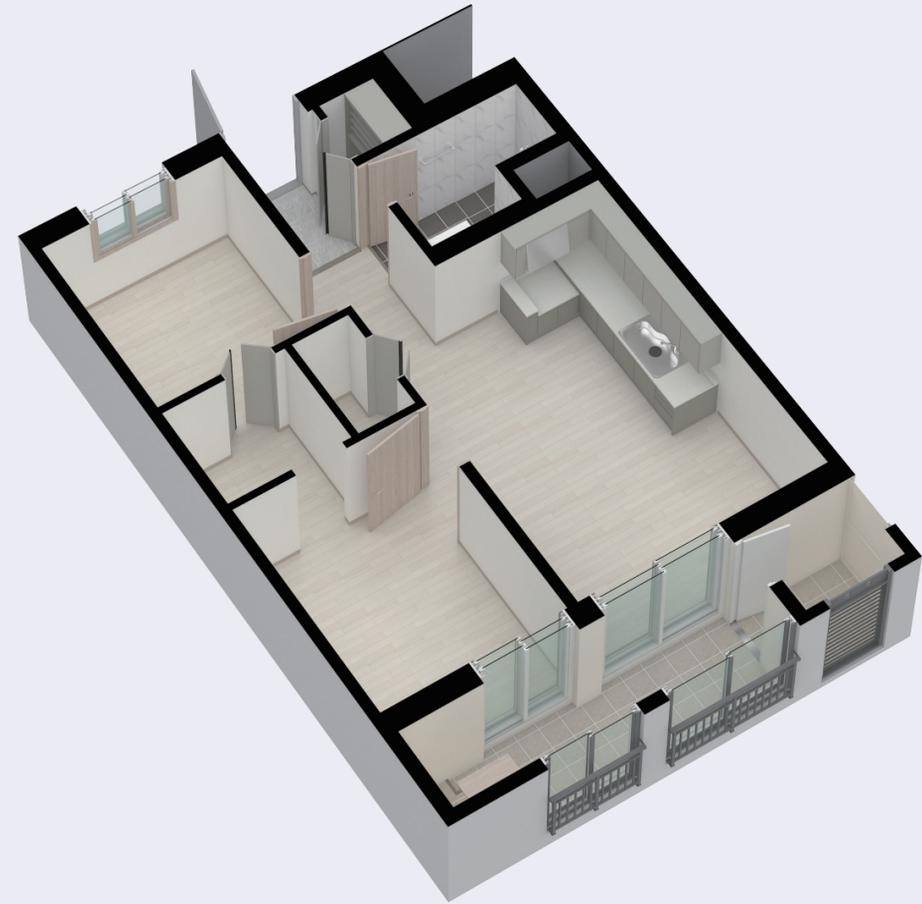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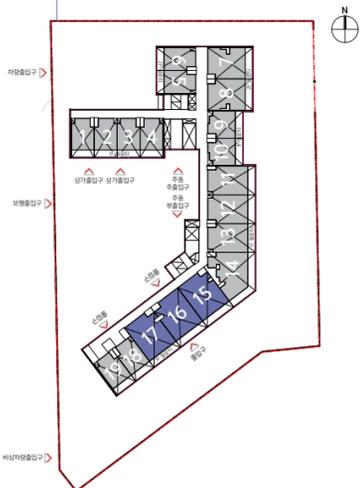
주택면적	
주거 전용	44,980m ²
주거 공용	25,037m ²
기타 공용	11,441m ²
지하주차장	27,860m ²
계약면적	109,318m²

실별면적	
거실	8.46m ²
침실 1	8.50m ²
침실 2	7.20m ²
주방/식당	11.28m ²
욕실	3.24m ²
현관	2.14m ²
드레스룸	2.77m ²
창고	1.39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계	9.60m ²



Key Map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마감재대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파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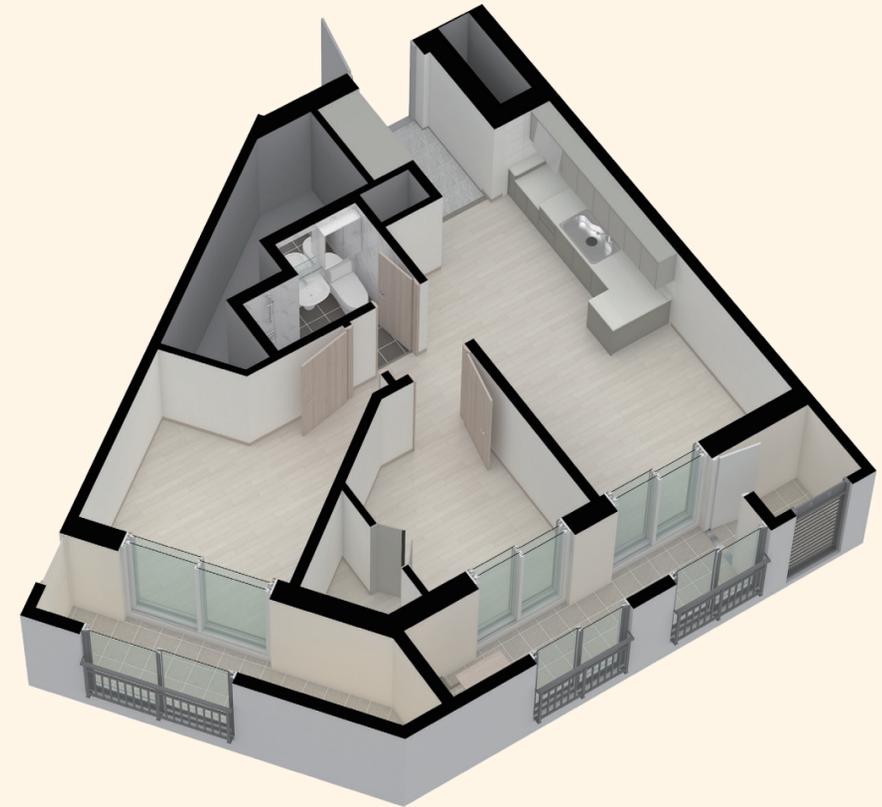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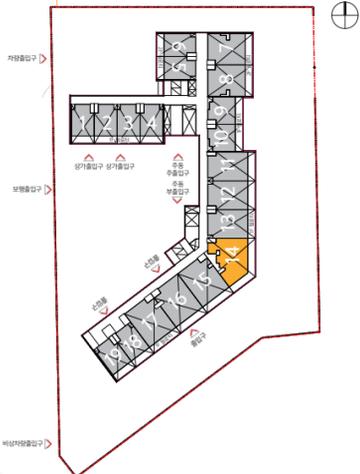
6세대

주택면적	
주거 전용	44,9500m ²
주거 공용	25,0204m ²
기타 공용	11,4336m ²
지하주차장	27,8415m ²
계약면적	109,2455m²

실별면적	
거실	7.81m ²
침실 1	8.40m ²
침실 2	8.91m ²
주방/식당	13.11m ²
욕실	3.07m ²
현관	2.63m ²
초과발코니	1.02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1	6.70m ²
발코니 2	9.94m ²
발코니 계	16.64m²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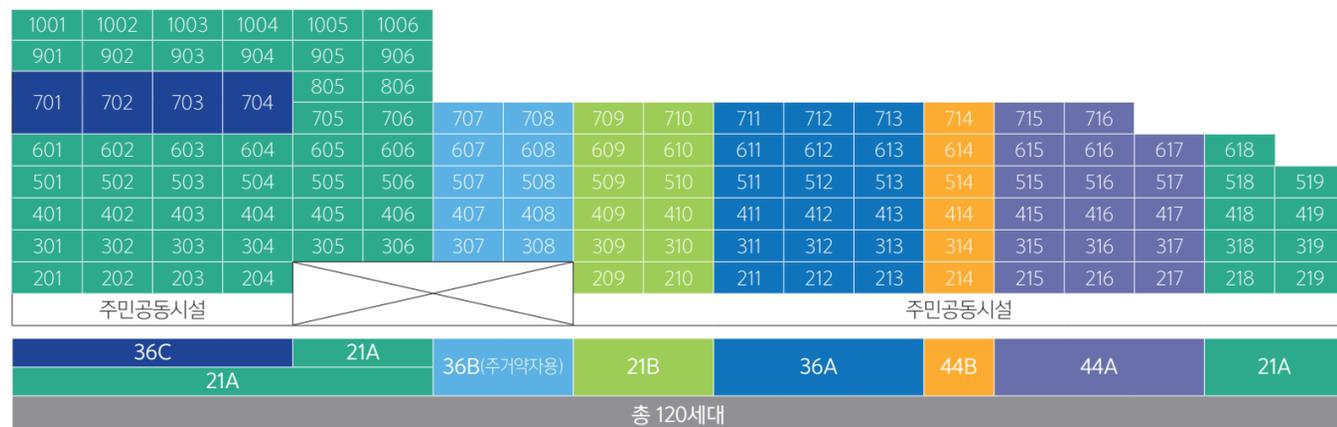


- * 본 팸플릿에 표기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마감재로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치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0.3025=평)
- * 발코니는 경량 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문 계파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 상기 단지배치도 및 동호배치도는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 마감재 시설내역

품목	시설내역							비고	
	21A	21B	36A	36B	36C	44A	44B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HPL							
	현관바닥	자기질타일(400*400)							
	현관등	LED							
거실	비디오폰	7inch 칼라LCD							
	거실바닥재	룸카펫(2.0T)							
	거실등	LED							
	거실벽지	실크벽지							
주방	싱크대	HPL							
	개수대	언더싱크용 430	언더싱크용 430	언더싱크용 750	언더싱크용 750	언더싱크용 750	언더싱크용 850	언더싱크용 850	
	레인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대불이혼합수전							
	주방바닥재	룸카펫(2.0T)							
	주방타일	도기질타일							
	빌트인	가스쿡탑(2구, 그릴미부착), 냉장고(130~160L)							21A, 21B만 해당
	일반가구류	냉장고장, 반침, 책상							
침실	침실바닥재	룸카펫(2.0T)							
	침실벽지	실크벽지							
	침실문짝	데코시트							
	창호	데코시트							
욕실	벽	도기기타일							시스템 욕실
	바닥	자기질타일							
	세면기	도기질							
	양변기	도기질							
	샤워수전	싱글레버식 / 높이조절형							
	세면기수전	싱글레버식							
발코니	욕조	없음							
	발코니샷시	합성수지창호							
	발코니등	LED							
	발코니바닥	자기질타일							
기타/정보통신	세탁기수전	십자핸들(스프레이건 포함)							
	위성TV수신시스템	수신							
	정보통신	초고속1등급							
	CCTV시스템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 등							

* 상기 마감내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30)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72-2번지 일원 행복주택 120호

*19,927,0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가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노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산업단지근로자**
 - (우선공급) 남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일반공급) 남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10.01 ~ 2002.09.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1956.09.30 이전 출생)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LH 전북지역본부)접수일에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태	공급대상	건설호수 120호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21A	청년	6	21.85	12.1623	5.5577	13.5336	8.51036
	산업단지근로자	47					
21B	청년	6	21.93	12.2068	5.5781	13.5831	8.52980
	산업단지근로자	6					
36A	청년	4	36.96	20.5730	9.4012	22.8925	89.8267
	산업단지근로자	12					
36C (복층형)	청년	2	36.61	20.3781	9.3122	22.6758	88.9761
	산업단지근로자	2					
36A	고령자	2	36.96	20.5730	9.4012	22.8925	89.8267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10	36.82	20.4950	9.3656	22.8058	89.4864
44A	산업단지근로자	14	44.98	25.0371	11.4412	27.8600	109.318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					
44B	산업단지근로자	4	44.95	25.0204	11.4336	27.8415	109.2455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					

■ 임대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120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21A 21B	청년	소득 X	-	12	14,722	736	13,986	83,420	(+) 2,000	16,722	73,420	6	2023년 01월 예정	
		소득 O	-		15,588	779	14,809	88,330	(-) 12,000	2,722	108,420			
	산업단지 근로자	14	39	17,320	866	16,454	98,140	(+) 3,000	18,588	73,330				
36A	청년	소득 X	-	4	22,440	1,122	21,318	127,160	(-) 12,000	3,588	113,330			6
		소득 O	-		23,760	1,188	22,572	134,640	(+) 5,000	22,320	73,140			
	산업단지 근로자	5	7	26,400	1,320	25,080	149,600	(-) 14,000	3,320	127,300				
36C (복층형)	청년	소득 X	-	2	22,440	1,122	21,318	127,160	(+) 11,000	33,440	72,160	6		
		소득 O	-		23,760	1,188	22,572	134,640	(-) 18,000	4,440	164,660			
	산업단지 근로자	1	1	26,400	1,320	25,080	149,600	(+) 13,000	36,760	69,64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	25,080	1,254	23,826	142,120	(-) 19,000	4,760	174,220	20			
		-		25,080	1,254	23,826	142,120	(+) 16,000	42,400	69,600				
	산업단지 근로자	7	11	31,200	1,560	29,640	176,800	(-) 21,000	5,400	193,350				
44A 44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	31,200	1,560	29,640	176,800	(+) 14,000	39,080	72,120		6~10		
		-		31,200	1,560	29,640	176,800	(-) 20,000	5,080	183,780				

- 이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우선공급은 남원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 기업체)에 관사나 숙소의 산업단지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기업체별 우선공급호수는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 입소자격을 갖춘 입소희망자 비율에 따라 배분 (→지구여건에 따라 기준 변경적용가능)후 잔산 추첨하여 동호를 결정하며, 기업체별 입소희망자가 기업체별 배분받은 공급호수보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별 정한 입소희망자 명부상 서열이 빠른자가 입소자로 결정됩니다. 이 때 **우선공급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업체**입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해당 기업체의 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없거나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소속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에 개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공급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일반공급 계약당사자는 개인입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태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21B형 산업단지근로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36A,36C형 산업단지근로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36A형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 →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44A,44B형 산업단지근로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21A형과 21B형은 통합하여 추첨(산업단지근로자 순위당첨 후 추첨→청년계층 추첨) 공급합니다.
- 44A형과 44B형은 통합하여 추첨(산업단지근로자 순위당첨 후 추첨→신혼부부·한부모계층 추첨) 공급합니다.
- 36A형의 추첨후 남은주택은 36C(복층)형의 신청계층 중 미당첨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C(복층)형의 추첨후 남은주택은 36A형의 신청계층 중 미당첨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사회초년생)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사회초년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21B형의 주택에는 식탁겸용책상, 냉장고, 가스쿠팩, 레인지 후드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NOTICE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신청인 경우 기업체 관사 또는 숙소 입소예정인 근로자를 기준)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정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우선공급(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등)

■ **우선공급대상자** (*현장접수만 받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남원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소속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입주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고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원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 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일 것

가구원수	일반 산단근로자		맞벌이 산단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	-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산업단지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우선공급받은 업체가 정한 입주순위

3-2 일반공급

-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천함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3-2 (1) 산업단지 근로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일 것

가구원수	일반 산단근로자		맞벌이 산단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	-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순위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시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21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3-2 (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⑥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⑥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10.01~2002.09.30)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589,9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㉔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㉔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주첨 ※ 21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주첨함

3-2 (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⑥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⑥를 모두 갖춘 사람

-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㉔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재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맞벌이신혼부부란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를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9세 이하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 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주첨 ※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주첨함

3-2 (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NOTICE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1.10.12(화) 10:00 ~ '21.10.20(수) 18:00 ※토,일요일 포함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신청 '21.10.20(수) 10:00 ~ 16: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현장접수 장소 남원금동2 휴먼시아 2층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 (금동 586)]	'21.10.22.(금)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1.10.25.(월) ~10.27.(수) 10:00~1700 ※ 우편접수 등기우편 주소 : (55058)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남원노암 행복주택 담당자 *등기우편은 '21.10.27.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22.01.11(화) 16: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전자계약 '22.01.26(수) 10:00~ '22.01.28(금)16:00 현장계약 '21.01.28(금) 10:00~16:00 ※ 현장계약 장소: 남원금동2 휴먼시아 2층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 (금동 586)]
일반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1.10.12(화) 10:00 ~ '21.10.20(수) 18:00 ※토,일요일 포함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신청 '21.10.20(수) 10:00 ~ 16:00 (중식시간 12:00~13:00제외) ※현장접수 장소 남원금동2 휴먼시아 2층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 (금동 586)]	'21.10.22.(금)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1.10.25.(월) ~10.27.(수) 10:00~1700 ※ 우편접수 등기우편 주소 : (55058)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남원노암 행복주택 담당자 *등기우편은 '21.10.27.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22.01.11(화) 16: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전자계약 '22.01.26(수) 10:00~ '22.01.28(금)16:00 현장계약 '21.01.28(금) 10:00~16:00 ※ 현장계약 장소: 남원금동2 휴먼시아 2층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 (금동 586)]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한 [2021.10.25(월) ~2021.10.27.(수)]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1.10.22(금)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21.10.25(월)10:00~'21.10.27(수)17:00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10.25(월)10:00~'21.10.27(수)17:00]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10.27(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
 ** 봉투 겉면에 "남원노암 행복주택 서류제출" 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10.12(화) 오전10시부터 마감일 '21.10.20(수) 오후 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 까지 접수완료(저장기존)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서(개인별) *공사양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자녀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기업체별 담당자가 서류를 취합 후 1식으로 제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주민센터
산업단지 근로자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자녀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주민센터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계층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NOTICE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 부부 및 한부모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재청약자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 · 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2.01.26(수) 10:00 ~ '22.01.28(금)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범목적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 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장소 : 전북 남원시 가방들길 57, 남원금동2 휴먼시아 2층]**
 - 산업단지기업체 우선공급 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계약전 별도 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2.01.28(금)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동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인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으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유연장이 관리하는 농지업무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NOTICE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금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병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 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고령자</td> <td>20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산업단지근로자</td> <td>6년</td> </tr> </tbody> </table> <p>(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p>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고령자	2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고령자	2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 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동측으로 제조공장, 서측으로 12M 도로 및 공단삼거리, 북측으로 20M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 주변 제1,2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나,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헨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지하 P1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재연토크(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바닥결로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정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빌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는 개별난방지구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 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보도·조정·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주민운동시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커뮤니티카페, 북실롱, 공유주방, DIY지역공방, 무인택배, 계절창고, 재활용창고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ICE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 환풍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새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5~10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29대, 지하 66대를 포함하여 총 95대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품,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방·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으며,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차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립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설치 시 입주자 부담)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인근에 남원초등학교가 있으며, 다른 세부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 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단열초치 준수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남원노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418-82-06818)	태진건설산업(주), (주)대창건설	-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토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청각장애인 전체세대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욕실 (1개소에 한함)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아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호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내 (7)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사업2부

팸플렛 배부처	LH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본관4층(주거복지사업2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금동 586) 남원금동2 휴먼시아 아파트 ※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남원금동2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p>△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

2021.09.30